

제6장 『자원 관리』 1절 - 자원 확보

문서번호	발전(화력)-QESHM01
개정번호	2
개정일자	2011. 8. 15.
Page	1/1

## 6.1 자원확보

- (1) 사장은 다음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, 확보 및 제공하여야 한다.
  - (가) 품질, 환경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, 실행, 유지 및 지속적 개선
  - (나) 안정적인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로 고객만족 증진
  - (다) 환경오염 및 리스크 예방, 법규 및 그밖의 요구사항 준수
- (2) 자원은 인력, 특수공정(전문), 기술 및 재정을 포함한다.
- (3) 본사 발전본부장 및 사업처(소)장은 품질, 환경 및 안전보건 방침과 경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, 결정하여야 한다.
- (4) 모든 부서장은 고객의 의견이나 만족도를 분석하여 자원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.
- (5) 인력의 채용 및 운영은 사규「취업규칙」[23100], 「인사관리규정」[22100]에 따른다.

#### <참고/관련자료>

- o 사규「취업규칙」[23100]
- O 사규「인사관리규정」[22100]



문서번호	발전(화력)-QESHM01
개정번호	3
개정일자	2011. 8. 15.
Page	1/2

제6장 『자원 관리』 2절 - 인적 자원

## 6.2 인적자원

### 6.2.1 일반사항

- (1) 품질, 환경 및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, 교육 훈련, 숙련도 및 경험 등의 자격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.
- (2) 품질,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내의 모든 업무/인원은 품질, 환경 및 안전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.
- (3) 본사 교육담당부서는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

#### 6.2.2 적격성, 교육훈련 및 인식

- (1) 발전본부장 및 사업처(소)장은 품질, 환경 및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요구되는 자격기준(학력, 숙련도, 경험 등)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(2) 자격을 요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,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.
  - (가) 특수공정 작업자
  - (나) 법규 및 회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소지자
  - (다) 사내강사(직무교육)
  - (라) 내부 감사자/선임감사자(품질,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)
  - (마) 검사자. 시험원
  - (바) 환경영향 평가자, 위험성(Risk) 평가자, 안전보건담당자
  - (사) 기타 품질, 환경 및 안전보건 업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
- (3) 직원의 자격기준, 교육훈련, 평가 등의 자격관리절차의 수립 책임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교육담당부서 : 사내강사 자격 관리
  - (나) 품질안전부서 : 그 외 특수공정 및 역무 수행직원의 자격 관리
- (4) 자격소유자는 해당 절차서 따라 주기적으로 적격성이 평가되어야 하며, 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 교육훈련 후 재평가한다.
- (5) 본사 및 사업처(소) 교육담당부서는 직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, 이행하여야 한다.
- (6) 교육훈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, 직원의 역할과 수행업무가 품질, 환경 및 안전보



## 품질/환경/안전·보건 매뉴얼

문서번호	발전(화력)-QESHM01
개정번호	3
개정일자	2011. 8. 15.
Page	2/2

제6장 『자원 관리』 2절 - 인적 자원

건에 어떤 관련성이 있고, 중요성이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(가) 경영방침, 품질/환경/안전보건 목표,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을 포함한 경영시스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
- (나) 매뉴얼/품질보증계획, 절차서, 관련 표준 및 경영시스템 요건 준수
- (라) 규정된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초래된 결과와 영향
- (나) 업무활동으로 인해 파생 또는 파생 가능한 환경영향(실제영향, 잠재영향포함), 위험성(Risk)과 환경/안전보건 경영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
- (7) 교육훈련은 업무별/기능별 직원의 능력, 책임, 이해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립한다.
- (8) 품질, 환경 및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의 소속이 변경되었거나 책임사항이 변경되면 해당부서장은 품질안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6개월내 해당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.(예: 검사자/시험원, 품질/안전업무담당자)
- (9) 각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 및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하여야 한다.
- (10) 직원의 학력, 교육훈련 실적, 경력 및 자격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
#### <참고/관련자료>

○ 사규「교육훈련규정」[22200]

O『교육훈련』절차서 [전사(공용)-QP6201]

○ 『사내강사제도 운영』 지침서 [전사(공용)-QP6201-I01]

O 『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』지침서 [전사(공용)-OP6201-I02]

O『자력관리』지침서 [전사(공용)-QP6201-I03]

O『교육훈련비 집행』지침서 [전사(공용)-QP6201-I04]

○ 『사내연수 교육생 준칙』지침서 [전사(공용)-OP6201-I05]

O 『품질, 환경, 안전보건 교육』지침서 [전사(공용)-QP6201-I06]

○『품질감사자 자격 관리』절차서 [발전(원자력)-OP6202]

O『품질검사자/시험원 자격 관리』절차서 [ 발전(원자력)-QP6203]

A4(210×297mm)

KEPID



문서번호 발전(화력)-QESHM01 개정번호 2 개정일자 2011. 8. 15. Page 1/1

제6장 『자원 관리』 3절 - 기반 구조

## 6.3 기반구조

- (1) 본사 발전본부장 및 사업처(소)장은 직원의 역무수행에 필요한 기반구조를 결정, 확보,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.
- (2) 기반구조는, 해당되는 경우,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  - (가) 건물, 사무실 및 관련 유틸리티
  - (나) 차량, 중기,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, 시험분석 장비(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)
  - (다) 지원서비스(기술, 운송, 통신 또는 정보 등)
- (3) 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/기기를 고객이 지급 할 경우, 고객과 협의하여 필요장비를 파악, 결정하여야 한다.

### <참고/관련자료>

- O 사규「복리후생규정」 [23500]
- O 사규「안전보건관리규정」[23600]
- O 사규「공기구 관리지침」



문서번호 발전(화력)-QESHM01 개정번호 2 개정일자 2011. 8. 15. Page 1/1

제6장 『자원 관리』 4절 - 업무환경

## 6.4 업무환경

- (1) 본사 발전본부장 및 사업처(소)장은 직원의 역무수행에 필요한 업무환경을 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(2) 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직원의 동기부여, 만족 및 업무능률을 고려하여 업무환경을 파악, 결정한다.
  - (가) 안전/보호장비의 설치, 안전규칙 및 지침 마련
  - (나) 휴식 또는 편의시설
  - (다) 열, 습기, 빛 및 공기흐름을 고려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
  - (라) 위생 및 청결유지, 소음, 진동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
- (3) 각 부서장은 작업장의 안정성 확보 및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활동, 환경청결 및 안전보건활동계획을 수립, 이행한다.
- (4) 기타 업무환경은 사규「복리후생규정」[23500] 및「안전보건관리규정」[23600]에 따른다.

#### <참고/관련자료>

- o 사규「복리후생규정」 [23500]
- O 사규「안전보건관리규정」[23600]